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70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김남근 · 민병덕 · 이강일
남인순 · 강준현 · 김현정
김승원 · 김우영 · 박찬대
김남희 · 유동수 · 한창민
염태영 · 박범계 · 최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규정 미비로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부패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을 신고 접수처에 추가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이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신고자등이 신고 후 피신고자등이 제기하는 민 · 형사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복성 성격의 민 · 형사소송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보복성 성격의 민 · 형사소송을 불이

익조치로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함. 신고 준비 과정의 행위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을 강화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실효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나목).

나.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아목)

다. 확대된 신고 접수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 실시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함(안 제12조제22호 신설).

라. 부패행위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추가하고, 공직자의

- 신고의무 대상 기관도 이에 맞추어 확대함 (안 제55조 및 제56조).
- 마.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58조의2제2항).
-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신고인 등에게도 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함(안 제59조제2항).
- 사. 수사기관이 고발 사건 처분 시 그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9조제7항).
- 아. 부패행위 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 자. 부패행위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제1항).
- 차. 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2조의3제5항 신설).
- 카. 신분보장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62조의6제2항).
- 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제62조의7,

제62조의8)

파. 협조자 보호 대상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로 확대함(안 제65조).

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66조).

거. 신고자 보호가 준용되는 범위에 지방의회 증언, 다른 법률에 따른 청문회 증언 등을 추가함(안 제67조제2호).

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30억 원)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제2조제4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과 나목”을 “가목, 나목,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고발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제12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55조 중 “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
2.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3.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
4. 수사기관
5.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7.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 중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를 “제5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제5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 중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9조제7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 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한 신고자가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부패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을 “제2조제7호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를 “금지(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을 “제2조제7호자목 또는 차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신분보장등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의6제1항 중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2항 전단 중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62조의7 및 제6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7(보복 목적 소송의 각하 등) 법원은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8(보복 목적의 형사고소·고발에 대한 처리) ① 검사는 신고자등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이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고소·고발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중 “신고와”를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제

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사기관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의 경위 및 동기, 공익 기여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은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접수된 신고가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7조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를 “국회·지방의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언하거나”로 한다.

제6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비용의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한다.

제68조제3항제5호 중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을 “제2조제7호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u>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u>
<u>나. (생 략)</u>	<u>다. (현행 나목과 같음)</u>
<u>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u>	<u>라. 가목, 나목, 다목</u> ----- ----- -----
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7. -----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u>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민</u>

<u>안.·자.</u> (생략) 8.·9. (생략)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1. (생략) <u><신설></u>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u>위원회</u>에 신고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사소송 제기, 형사고소·고발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u> <u>자.·차.</u> (현행 아목 및 자목과 같음) 8.·9.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능) ----- -----. 1. ~ 21. (현행과 같음) 22. <u>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u>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u> -----. 1. <u>위원회</u> 2. <u>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u> 3. <u>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u> 4. <u>수사기관</u> 5. 「<u>국회법</u>」에 따른 국회의원 6. 「<u>지방자치법</u>」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	--

<신 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 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생략)

7.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부패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 무) -----

----- 제55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
-----.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제5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략)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 ⑨ (생략)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신 설>

② -----

-----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 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증거를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자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수집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한 신고자가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

----- 경우(부패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부패행위 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

-----제2조제7호자
목 및 차목-----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2. (생략)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생략)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
-- 금지(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 제
2조제7호자목 또는 차목-----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신분보장등조치 이행

⑤·⑥ (생략)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본다.

③ (생략)

<신설>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

5천만원 이하-----

-----.

② -----

-----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의7(보복 목적 소송의 각하 등) 법원은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제2조제7호 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u>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62조의8(보복 목적의 형사고소 · 고발에 대한 처리) ①</u> <u>검사는 신고자등에 대한 형사고소 · 고발이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고소 · 고발을 각하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u>
제65조(협조자 보호) <u>신고와</u> 관련 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 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u>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u> ----- ----- ----- ----- ----- ----- ----- -----.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 면제하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요구하여야 한
다.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소송
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

<u><신 설></u>	<u>우 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수사기관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의 경위 및 동기, 공익 기여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⑧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은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⑨ 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접수된 신고가 제2조제7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u>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제67조(준용규정) ----- ----- -----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
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
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
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
고한 경우

3. (생략)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
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생략)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
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
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후

-----.

-----.

<삭 제>

<삭 제>

1. (현행 제3호와 같음)

2. -----
-----국회·지방의
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언하거나-----.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이 경

단 신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 ⑨ (생략)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 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

우 보상금은 비용의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한다.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2조제7호자목 및 차목--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 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생략)

③ (생략)

<신설>

----- 아목-----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